

자문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조명·전기설비학회(이하 “본 학회”라 한다)의 제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한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- ① 학회 운영 제반사항의 자문
- ② 친선교류회
- ③ 기타 사항

제3조(구성 및 위촉) 위원회는 회장단에서 위촉하고 자문위원의 정수는 직선 평의원수의 10% 이내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)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,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제5조(회의) ①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.

제6조(간사) 위원회의 회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 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.

제7조(의견 청취)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8년 2월 13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16년 7월 2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